



일 자 : 2022년 2월 08일
수 신 : [REDACTED]
참 조 :
발 신 : 대원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강영중
제 목 : 법인이 특정임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에 대한 세무검토

1. 항상 귀사의 사업이 항상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2. 귀사가 특정임원에게 대학원 학자금 지급 시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의견서를 송부 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 부 : 법인의 특정임원 학자금 지급에 따른 세무검토 1 부. 끝.

대 원 세 무 법 인
대 표 세 무 사 강 영 중

법인이 특정임원에게 지급하는 대학원 학자금에 대한 세무검토

귀사가 특정임원에게 지급할 학자금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과세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임원의 경영전문대학원 학자금 지급액의 손금처리 및 관련법령

1) 법인이 특정임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손금산입 여부

귀사가 최고전략책임자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영전문대학원 학자금은 수업내용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의 요건을 갖춘 회사내부규정으로 사규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 2005.01.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 2005.01.03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주주 임원인 자가 국내 대학 등에서 6개월 이상의 장기교육이 필요한 최고경영자과정을 수업하는 경우 당해 수업내용 등으로 보아 주주 임원 개인이 부담할 것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수업내용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형식으로 회사 내부규정에 의하여 특정임원 등이 아닌 경우에도 차별없이 수업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교육내용 등이 사규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업무관련 여부 등은 사실판단하는 것임.

법인의 임원이 업무와 관련되거나, 신경영 습득을 위하여 각종 단체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세미나 일반경비에 충당되는 사회통념의 참석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위 유권해석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업무와의 관련성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회사내부규정이 있는 경우 손금처리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때 손금처리여부의 기준은 ① 학자금 지원 대상 임원이 전체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와 ② 해당 학자금이 정관 등에 따른 급여지급기준상의 임원상여금 한도 이내인지 여부, ③ 해당 임원이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여부가 손금처리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